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59
----------	-------

발의연월일 : 2025. 10. 21.

발 의 자 : 한병도 · 박희승 · 이원택
안호영 · 이성윤 · 윤준병
신영대 · 허 영 · 진선미
이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고 위원 자격도 제외되어 있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 교육감이 지원위원회 참여하고 부의사항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17조부터 제122조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도교육감(「지방자치법」 제135조의 사무에 한정한다)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을 “장, 도교육감 및”으로 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①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7조제1항 중 “도지사”를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로, “둔다”를 “두며,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명”을 “5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은 도지사가”로, “위촉하되”를 “위촉하고”로,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을 “도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은”으로,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을 “임명 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소속”을 “또는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으로 한다.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제118조제1항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도교육감이”로 한다.

제119조제1항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직원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직원은 도교육감이”로 한다.

제120조제4항 중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를 “제1항에”로,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를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에게”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도교육감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전북자치도의”를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의”로 한다.

제121조제1항 본문 중 “도지사에게”를 “일반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교육·학예에 관한”으로, “결과를”을 “결과는 도교육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 또는 통보되는”을 “보고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고 또는 통보받은”을 “보고받은”으로 한다.

제122조제1항 중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 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 ⑦ (생략)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장, 도교육감 및-----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04조(읍·면·동의 구역 특례)

①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읍·면·동의 폐지, 설치, 분할, 합병을 승인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7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
분석·검증하고 제121조에 따
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
(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
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
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
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
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2명은 도
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을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⑤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두며,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사무는 도교
육감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5명-----
-----.

④ -----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은 도지
사가-----위촉하고--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은-----
-----임명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2명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⑤ -----또는 전북자치도
교육청 소속-----
----. -----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118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u>도의회</u> 의 동의를 받아 <u>도지사</u> 가 임명한다.	제118조(감사위원장) ① ----- ----- <u>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장</u> 은 <u>도지사</u> 가 임명하고, <u>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위원장</u> 은 <u>도교육감</u> 이-----.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되, 사무기구의 직원은 감사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u>도지사</u> 가 임명한다.	제119조(감사위원회 사무기구) ① ----- ----- ----- ----- ----- --- <u>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직원</u> 은 <u>도지사</u> 가 임명하고 <u>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직원</u> 은 <u>도교육감</u> 이-----.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 ③ (생략)	제120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u> <u>감사원장, 교육부장관,</u>	④ <u>제1항에</u> ----- ----- ----- ----- <u>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u>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전북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

는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도교육감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전북자치도, 전북자치도교육청의-----

-----.

제121조(자치감사 결과의 처리 등) ① -----

-----일반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교육·학예에 관한-----

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의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단서 삭제>

② -----보고되는-----

--.

③ -----
-----보고받은-----

-----.

제122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 정지 등) ① -----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

②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 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 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생 략)	----- ----- ----- -----. ③ (현행과 같음)
---	---